

의안번호	2213307
의 퇴 인	나경원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C5358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6조의4(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특례)	「장애인복지법」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기본재산액(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)을 300%로 적용하고, 거주 목적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5%만 적용하며,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-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일 것 - 금융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- 해당 주거용 재산 외에 다른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4(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액을 확대할 경우, 기존 수급자 중 일부 해당가구의 수급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신규 수급 가구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300%로 적용하고, ②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(현행 1.04%)의

25%만 적용하며(즉, 현행 1.04% 유지 시 0.26%만 적용), ③ 이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을 공제하도록 규정

- ①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, ② 금융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의 2배 이하, ③ 해당 주거용 재산 외 다른 일반재산 미보유

-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일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되어, 기존 수급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이 늘어나거나 신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기존 수급가구의 수와 그 규모, 신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될 가구의 수와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현 시점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재산, 금융재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- 또한, 현행 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을 획득하지 않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료가 부재
- 안 제3항제2호는 금융재산 기준액을, 제4항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·기준 등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